

제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3
----------	------

제출년월일 : 2005. 6.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 안 이 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004.08.11. 환경부령 162호)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정의조항을 변경하고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부과·징수시 부과대상을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로 정함으로써 부과 주체를 명확히하고 또한 수수료 대행징수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급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정의 조항 변경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등을 따로 정한 경우 즉시 고시하는 내용신설
-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자에게도 부과토록 개정
-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를 입주자대표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수납하여 일괄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의 100분의 5범위안에서 납입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조항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세대에 대하여 수수료감면 규정

3. 근 거 법 령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08.11. 환경부령 제162호]

4. 의 안 전 문 : 불 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첨 부 : 1. 기타참고자료(법령등) 사본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제2호중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를 “(이하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중 영업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 하는 커피·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 제목중 “지정 등”을 “지정 고시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 등을 따로 정한 경우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중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감량의무사업자는”을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이하 “감량의무사업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7조 제목을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본문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를 “감량의무사업자”로 한다.

제8조 제5항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4항중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를 “입주자대표회, 관리사무소 및 운영주체”로 한다.

제11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를 공동주택관리비에 포함하여 일괄 고지·납입한 경우 매월30일까지 시 수입으로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를 납부 대행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세대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조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u>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u>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생략).</p> <p>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u>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 -----</p> <p>1.(현행과 같음)</p> <p>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u>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중 영업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u></p>
<p>3~6.(생략).</p>	<p>3~6.(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정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2. <u>감량의무사업자는</u>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3. - 4.(생략)</p> <p><u>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u>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 3.(생략)</p> <p><u>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u></p> <p>① - ④(생략)</p> <p>⑤시장은 <u>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u>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p> <p>2. <u>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이하 “감량의무사업자”라 한다)</u>는 --</p> <p>-----</p> <p>-----</p> <p>-----</p> <p>-----</p> <p>3. - 4.(현행과 같음)</p> <p><u>제7조(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u></p> <p><u>감량의무사업자는</u> -----</p> <p>-----</p> <p>1. - 3.(현행과 같음)</p> <p><u>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u></p> <p>① - ④(현행과 같음)</p> <p>⑤----- <u>감량의무사업장이</u></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p> <p>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p> <p>② - ③(생략)</p> <p>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p> <p>① - ③(생략)</p> <p>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p> <p>(삭제)</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p> <p>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 관리사무소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p> <p>⑤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를 공동주택관리비에 포함하여 일괄 고지·납입한 경우 매월30일까지 시 수입으로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를 납부대행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의2(수수료 감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세대에 대하여 수수를 감면할 수 있다.</p>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공포법령자료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을 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동호나 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배출자
4.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외의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배출자

②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타시군 사례

- 청주시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부과·징수)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 및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월별 처리수수료는 1,000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월별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공동주택관리비에 포함하여 매월 일괄 부과·징수한 경우 매월10일까지 시 수입으로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안에서 대행 수수료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제1호에서의 납부필증의 판매가격·공급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단, 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
2. 소년소녀가장세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강릉시 -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감면) ①시장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 제공하거나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월 1인당 15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목포시 -

제11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 2003·7·28>

②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7·28>

③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

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7.28>

-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5.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수급자
2. 기타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법예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문 ● 보도해당 ● 입법광고 ● 입법예고 ● 고시공고 ● 신문 스크랩 ● 주권재권 소식지 ● 2005주요 업무계획 ● 공약추진사업 ● 시정 100선 ● 재정현황 ● 2005년 예산시공계 	<div style="text-align: right;">No. 149</div> <p>172 Date : 05 13 2005 9:53AM Hit : 123</p>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height: 80px; margin-bottom: 10px;"></div> <p>제천시공고 제 2005 - 321호</p> <p>제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합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2005년 5월 13 일 제 천 시 장</p> <p>제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p> <p>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004.08.11. 환경부령 162호)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변경하고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부과금수시 부과대상을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로 정함으로써 부과 주체를 명확히하고 또한 수수료 대합정수에 따른 대합수수료 지급조항을 마련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정의 조항 변경 나.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등을 따로 정한 경우 즉시 고시하는 내용신설 다.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에게도 부과토록 개정 라.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를 입주자대표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합수납하여 밀납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의 100분의 5범위안에서 납입대합수수료를 지급하는 조항 신설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세대에 대하여 수수료감면 규정</p> <p>3. 의견의 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시장(참조 자</p>
--	--